

\*\*\* 138 페이지 아래.... ㉔번 부분 붉은색 삭제하고 파란색과 같이 교체

....

㉔ 단지 착오로 공탁을 하거나 공탁원인이 소멸된 때에 한하여 공탁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공탁선례 제2-145호). 공탁자는 유죄판결이 확정 되더라도 착오로 공탁하거나 공탁원인이 소멸된 사실을 증명하면 공탁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아래 파란색 내용으로 교체수정

㉔ 형사변제공탁 회수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 489조에 의한 회수 및 공탁원인소멸에 따른 회수를 하지 못한다. 다만, i)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ii) 공탁의원인이 된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는 제외한다)이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공탁법 제9조의2). 이때 공탁물회수동의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는 해당 공탁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공탁규칙 제49조의2).

\*\*\* 190 페이지 아래 부분에 아래 공탁선례 추가

**공탁법 기본서**

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탁서상의 공탁원인사실란에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나, 원천징수세액의 공제를 소명하는 자료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공탁선례 제2-173호).

3) 조건부 공탁의 경우  
 피수용자가 반대급부...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을...하는 한 공탁은 효력이 없다.  
 (대판 1979.10.30, 7...붙여 무효가 된 공탁을 수용의 개시일 이전에 반대급부가 없는 공탁으로 정정하면 그 공탁이 유효하게 되나, 수용의 개시일이

**이 부분에 아래 공탁선례 추가**

□ 관련선례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납세증명서 제출을 반대급부 조건으로 한 경우 위 수용보상금 공탁의 효력 유무 (공탁선례 20241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라는 행정처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일 뿐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손실보상금 청구권자) 사이의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고, 국세징수법 제107조 제1항의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이 되는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관리기관과의 계약에 따른 대금 수령의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까지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한다면 이는 피수용자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 내지 침해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피수용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미제출을 이유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따라서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손실보상금의 공탁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chapter 혼합공탁<sup>1)</sup>

### 01절 총설

① 혼합공탁이란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상 두 개 이상의 공탁을 채무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하나의 공탁절차에 의하여 하는 공탁을 말한다. 예컨대, 특정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거나 하여 채무자의 입장에서 보아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고, 또한 그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면 압류경합 등으로 인하여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경합을 원인으로 하는 집행 공탁을 합한 하나의 절차에 의한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② 이러한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자들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집행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만약 혼합공탁이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중 어느 한 공탁의 절차 내지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나머지 다른 공탁의 절차 내지 요건은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혼합공탁의 효력은 물론 공탁의 절차 내지 요건을 갖춘 변제공탁 또는 집행공탁의 효력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 02절 혼합공탁의 신청

#### 1 관할공탁소

집행공탁은 원칙적으로 관할에 관한 규정이 없고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지참채무의 원칙상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법원 소재 공탁소에 공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3채무자는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원인으로 혼합공탁을 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공탁자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제공탁사유가 채권자 불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공탁자들 중 어느 1인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 2. 혼합공탁사유

제3채무자는 아래와 같이 동일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와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선행하는 채권양도의 효력 유무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li><li>2. (가)압류명령과 채권양도 통지가 동시에 도달되거나 도달의 선후가 불분명한 경우</li><li>3. 가압류 이후에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된 경우</li><li>4. 금전채권에 대한 권리귀속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다툼이 있는 사람 전부 또는 일</li></ol> |
|---|

1) 이하, 금전채권의 혼합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예규 1400호, 2024. 8. 1 시행) 및 법원공무원 교육원 공탁실무 2025년 내용 참조.

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5. 금전채권에 대한 다수의 지분권자 상호 간의 지분관계를 알 수 없고 다수의 지분권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 3. 공탁서의 기재

① 채권양도(효력다툼 있음)가 선행하고 채권가압류가 후행한 경우, 채권가압류가 선행하고 채권양도가 후행한 경우, 채권가압류와 채권양도가 동시에 도달한 경우, 채권에 대한 권리귀속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다툼이 있는 사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채권에 대한 다수의 지분권자 상호 간의 지분관계를 알 수 없고 다수의 지분권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의 혼합공탁 공탁근거 법령조항은 민법 487조 후단, 민집 291조, 248조 1항을 기재한다.

② 채권양도(효력다툼 있음)가 선행하고 채권압류가 후행한 경우, 채권양도와 채권압류가 동시에 도달한 경우, 채권에 대한 권리귀속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다툼이 있는 사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채권에 대한 다수의 지분권자 상호 간의 지분관계를 알 수 없고 다수의 지분권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의 혼합공탁 공탁근거 법령조항은 민법 487조 후단, 민집 248조 1항을 기재한다.

③ 공탁서상의 피공탁자란에는 혼합공탁사유에 따라 양도인(집행채무자) 또는 양수인, 권리자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사람 전부, 지분권자 전부를 피공탁자로 기재하고, 집행채권자(가압류나 압류채권자)들은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기재하지 않는다.

④ 공탁서상의 공탁원인사실란에는 채권자 불확지 등 변제공탁사유와 가압류나 압류명령 및 그 송달일자, 채권양도와 그 통지일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4. 집행법원에 대한 사유신고

#### 가. 채권자 불확지 등 변제공탁사유와 압류명령이 있음을 이유로 혼합공탁을 한 경우

① 제3채무자는 지체 없이 공탁서를 첨부하여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수의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사유신고를 접수한 집행법원은 채권 등 집행사건의 배당절차사건으로 수리하게 되지만, 채권양도의 유·무효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그 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채권양도의 유·무효 확정 등 채권자 불확지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사실상 배당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③ 집행법원이 배당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법원의 배당절차를 통하여 (가)압류채권자 등 집행채권자가 공탁금에서 그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해서 필요한 문서로서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혼합해소문서, 혼합공탁지침 2조 3호, 8조)를 제출하여야 하고, 만일 압류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이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정지조건의 불성취가 확정되었으므로 사유신고를 불수리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사유와 가압류명령이 있음을 이유로 혼합공탁을 한 경우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다른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생기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공탁관은 혼합해소문서가 제출된 후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혼합해소문서 사본 첨부)를 하여야 한다

**다. 채권가압류가 선행하고 채권양도가 후행한 경우**

가압류발령법원에 공탁사실을 신고하지만, 이 경우의 신고는 배당가입의 차단효과 발생하지 않고 배당절차를 개시하는 사유도 되지 않는다. 가압류 이후에 채권양도가 있음을 이유로 혼합공탁이 된 후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공탁관은 지체 없이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 **관련판례** :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하에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예를 들어,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및 압류경합을 공탁사유로 공탁을 하면서 피공탁자 내지 채권자 불확지의 취지를 기재하지 않고 공탁근거조문으로 민집 248조 1항만을 기재한 경우 그 공탁은 변제공탁으로서의 효과가 없다(대판 2005. 5. 26. 2003다12311 참조).

□ **관련판례** : 법원공무원이 가압류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이에 접수일자를 표시하는 접수인을 찍은 경우, 가압류신청서에 찍힌 접수일자는 그 첨부서류인 승낙서에 대하여 확정일자에 해당한다(대판 2004. 7. 8. 2004다17481).

**제3절 혼합공탁의 지급**

**1. 출급**

**가.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경우**

① 피공탁자는 다른 피공탁자뿐만 아니라 (가)압류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자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 정보 및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이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 또는 조정조서 정보 포함)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첨부)를 첨부하여 공탁소에 공탁금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혼합공탁지침 9조 1항).

② 채권양도의 통지(효력다툼 있음) 이후에 양도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명령의 송달이 있어 혼합공탁을 한 경우 피공탁자인 양수인은 다른 피공탁자인 양도인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나 양도인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 이외에 (가)압류채권자들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그들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야만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공탁선례 2-316호 참고).

□ **관련판례**

① 혼합공탁에 있어서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는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서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

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2012. 1. 12. 2011다84076).

② 동일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과 채권양도 통지가 동시에 도달되거나 도달의 선후가 불분명한 경우, 가압류 이후에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된 경우에 채권양도와 가압류가 경합함을 이유로 혼합공탁이 이루어진 후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피공탁자는 공탁통지서와 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소에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혼합공탁지침 9조 2항).

#### □ 공탁선례

① 공탁자가 피공탁자를 ‘甲’ 또는 ‘乙’로 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과 ‘乙’을 채무자로 하는 ‘丙’의 채권가압류로 인한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한 경우, 피공탁자 ‘甲’이 ‘乙’을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丙’을 상대로 제3자의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받아 가압류결정의 집행이 모두 해제되었다면, ‘甲’은 가압류채권자인 ‘丙’의 승낙서나 그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확인판결 없이도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② 혼합공탁 이후에 ‘乙’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 등을 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甲’은 위 채권자들의 승낙서나 위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공탁금 출급청구권확인판결을 첨부하지 않고서도 출급청구 할 수 있다. 위 경우, 피공탁자 ‘甲’은 ‘乙’을 상대로 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판결과 ‘丙’의 채권가압류의 효력이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가압류집행취소결정정본과 송달증명)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공탁선례 201102-1).

#### □ 공탁선례

채권양도통지(확정일자부 통지) 후 양도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 방법과 양수인의 공탁금 출급방법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거나 채권양도와 가압류의 선후관계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487조 후단, 민집 248조 1항에 의한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유로 혼합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피공탁자인 양수인은 다른 피공탁자인 양도인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나 양도인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승소확정판결 이외에 가압류채권자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그를 상대로 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승소확정판결을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야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 나. (가)압류채권자가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경우

집행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채권양도의 통지(효력다툼 있음) 이후에 양도인을 압류채무자로 하는 압류명령의 송달이 있어 혼합공탁을 한 경우에 압류채권자가 공탁금을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채권양도가 무효이므로 양도인(집행채무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취지의 혼합해소문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집행법원의 배당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컨대 ① 채무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서, ② 위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 또는 조정조서정본, ③ 위와 동일한 내용을 담은 양수인의 동의서(인감증명서 등 첨부)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집행채권자가 압류·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채권 가압류명령이 선행하고 채권양도가 후행하여 혼합공탁을 한 경우에, 양도인(=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존속하는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송달되면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하여야 하고,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이 지급될 것이다.

#### □ 관련판례

①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가 승소하여 채무명의(=집행권원)를 얻는 등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된다. 절대적 무효는 아니고, 상대적 무효에 불과하다.

② 만약 가압류채권자가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현금화절차(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를 게을리하여 공탁을 방치하거나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양수인은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압류취소 또는 제소명령신청권이나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권을 대위 행사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 □ 관련판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하였다가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채권자가 당해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받아 둔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한 제3채무자의 혼합공탁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당해 채권의 양수인의 자격으로는 배당받을 수 없으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받는 것은 가능하다(대판 2014. 3. 27. 2011 다107818).

#### □ 사례문제와 해설

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채무 1천만 원이 있는데, 위 채권에 대하여 丙의 채권 전부 가압류결정, 丁에게 위 채권 전부를 양도(효력다툼 없음)한다는 통지서가 순차적으로 도달하였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 1) 甲이 취할 수 있는 공탁절차를 설명하시오.

丙의 가압류가 선행하고, 丁에게 채권양도가 후행한 경우, 甲은 가압류채무자 乙을 피공탁자로 하여 민집 291조, 248조 1항의 집행공탁만 해두어서는 나중에 가압류가 효력을 상실했을 때 그 집행공탁으로 양수인 丁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피공탁자(乙)가 아닌 양수인 丁이 공탁금을 출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양수인에게 변제할 경우 이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은 물론이므로, 다시 291조, 248조 1항의 집행공탁을 해야 한다. 따라서 甲은 이중지급 위험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혼합공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때 공탁근거법령은 민법 487조와 민집 291조, 248조 1항이고, 양도인 乙 또는 양수인 丁

을 피공탁자로 하고, 乙과 丁에 대한 공탁통지서, 丙에 대한 공탁사실통지서를 첨부해서 乙 또는 丁의 주소지 관할법원 소재 공탁소에 공탁해야 한다. 공탁한 후에는 가압류발령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양수인 丁이 다른 피공탁자인 乙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관은 이를 인가할 수 있는가?**

양수인 丁은 가압류가 취하, 취소 등으로 소멸되어야 비로소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안에서 丁의 출급청구는 인가할 수 없다.

**3) 丙이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출급청구하는 경우 공탁관은 이를 인가할 수 있는가?**

가압류권자가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본압류로 이전하게 되면 혼합공탁은 민집 248조의 집행공탁으로 전환(확정)된다.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 하고, 丙의 출급청구는 인가될 수 없다

**4) 戊가 乙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하면 戊는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되어 혼합공탁을 한 후에 양도인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다른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양수인과 선행가압류채권자 사이에서만 채권액에 안분하여 배당함이 타당하다(대판 2004. 9. 3. 2003다22561 참고). 이러한 법리는 가압류가 선행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양도인 乙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채권자는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 만약 그렇게 보지 않으면 공탁 전에는 양도인의 채권에 대해 압류하더라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없었던 채권자가 공탁 후에 돌연 양도인의 채권(=공탁금출급청구권)에 압류를 하면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게 되는데, 공탁에 이러한 효과를 부여해도 되는지 의문이 든다.

**2 회 수**

공탁자는 공탁금 중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민법」 제489조제1항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탁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공탁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받아 이를 공탁금 회수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공탁자는 혼합공탁의 사유가 없음에도 착오로 공탁하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는 각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3채무자인 공탁자가 선행된 적법·유효한 채권양도통지가 있었는데 이를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한 채 그 이후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이 동시에 도달되었음을 이유로 혼합공탁을 한 경우 '선행된 유효한 채권양도통지가 있었다는 증명과 공탁사유신고 불수리결정문'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회수청구할 수 있다.

**□ 공탁선례**

甲이 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乙이 송달받은 후 甲의 채권자 丁이 위 양도대상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여 乙에게 송달되었는데, 乙이 채권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있다고 하여 혼합공탁을 하였고, 丙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청구소송에서 얻은 화해권고결정을 집

행권원으로 乙의 다른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채권만족을 얻은 경우에는 공탁자인 乙은 공탁원인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공탁원인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양도인 甲 및 압류채권자 丁의 승낙서와 양수인 丙의 변제확인서(각 인감증명서 첨부)나 양수금 전액을 지급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될 것이나, 丁이 공탁자인 乙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丁이 패소한 판결정보는 丁의 승낙서에 갈음할 수 없고, 丁의 승낙서에 갈음하여 丁을 상대로 하여 丁의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 송달 당시 이미 압류대상채권이 양도되어 부존재한다는 확인판결을 받아 공탁원인소멸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 □ 공탁선례

乙은 甲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 중 일부를 丙에게 양도(확정일자부 통지) 후 다시 전액을 丁에게 양도(확정일자부 통지)하였고, 그 후 丁의 위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가 이루어져 제3채무자 甲은 “물품대금채무 전액이 채권양도 및 가압류 금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누가 정당한 채권자인지 알 수 없다”라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乙, 丙, 丁으로 하여 혼합공탁하였고, 乙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송달된 후 제1양수인과 제2양수인 겸 채권가압류권자가 공탁금 출급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제1양수인이 공탁금을 출급받기 위하여는 제2양수인 겸 가압류채권자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및 피공탁자 乙의 지정이 착오임을 증명하는 서면(채권양도의 효력에 다툼이나 의문이 없음에도 乙을 피공탁자로 지정한 것은 착오로 볼 수 있음)을 첨부하여 공탁금 출급청구할 수 있다. 이 사안에서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서를 첨부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안에서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인지 여부는 해당 공탁관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제4절 혼합공탁의 구체적 사례

#### 1 채권양도가 선행하고 채권 (가)압류명령이 후행하는 경우

##### 가. 채권양도의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동일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한 자와 양수인 사이의 우열은 (가)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진 이후에 양도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채권 (가)압류명령의 송달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양도가 우선하게 되므로 그 채권 (가)압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따라서 채무자(제3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채무를 이행하면 되고 혼합공탁을 할 수는 없다.

##### 나. 채권양도의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①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진 이후에 양도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명령의 송달이 이루어졌으나,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등 채권양도의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양도의 효력 유무에 따라 변제공탁(채권양도가 유효한 경우) 또는 집행공탁(채권양도가 무효인 경우)이 될 수 있으므로, 채무자(제3채무자)는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② 이와 달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피공탁자를 가처분권자 또는 수익자로 한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공탁자를 가처분권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혼합공탁 역시 불가능하다.

#### □ 관련선례

장래 발생할 채권까지 포함된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양도 및 확정일자부 통지가 이루어진 이후 다시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양도인을 채무자로 하는 4건의 가압류가 이루어져 채권양도의 효력 및 채권양도와 가압류 간의 우열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는 경우, 채무자는 민법 487조, 민집 291조 및 248조 1항을 근거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공탁선례 2-316).

#### □ 관련선례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금전채권에 대하여 甲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후 위 전부금채권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채권양도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경우 그 가처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에 있을 뿐 채권이 가처분권자 자신에게 귀속한다고 다투는 경우가 아니므로 제3채무자는 피공탁자를 '전부권자(甲) 또는 가처분권자'로 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 공탁을 할 수 없다(공탁선례 201010-2).

### 2 채권 (가)압류명령이 선행하고 채권양도가 후행하는 경우

#### 가. 채권 압류명령이 선행하고 채권양도가 후행하는 경우

채권 압류명령이 먼저 이루어진 이후에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저촉처분(양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상대적 무효). 따라서 채무자(제3 채무자)는 양도인의 채권에 관해 민집 248조 1항의 집행공탁을 할 수 있을 뿐, 혼합공탁을 할 수는 없다.

#### 나. 채권 가압류명령이 선행하고 채권양도가 후행하는 경우

채권가압류명령이 먼저 이루어진 이후에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압류가 이후에 취소 등의 사유로 그 효력을 상실할 수도 있으므로, 가압류 중인 상태에서 제3채무자로서는 채권자가 양도인이 될지 양수인이 될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한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과 채권가압류가 있음을 이유로 한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혼합공탁에 있어서는 가압류의 효력 여하에 따라 채권양도의 효력 유무가 결정되어지므로 채권양도 그 자체의 효력 유무는 혼합공탁의 요건이 아니다.

### 3 기타 문제되는 경우

#### 가. 채권 (가)압류명령의 송달과 채권양도의 통지가 동시에 도달된 경우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 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채권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 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 들 중 누구에

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된다. 하지만 채권양도의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었다고 인정되어 채무자가 채권양수인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은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 중 한 사람이 제기한 급부소송에서 전액 패소한 이후에도 다른 채권자가 그 송달의 선후에 관하여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기판력의 이론상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민법 487조 후단 및 민집 248조 1항(압류의 경우) 또는 민법 487조 후단 및 민집 291조, 248조 1항(가압류의 경우)에 의한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공탁한 이후에는 공탁서를 붙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집행법원(압류의 경우) 또는 가압류발령 법원(가압류의 경우)에 신고하여야 한다.

혼합공탁한 이후에 채권양도 통지 및 (가)압류결정정보 송달의 선후불명 또는 동시로 판명된 때에, 즉, 양수인과 압류채권자(가압류의 경우, 가압류에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얻은 가압류채권자)가 각각의 정산비용에 의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분할취득을 입증한 때에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의하여 집행법원의 배당절차가 개시되고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이 지급될 것이다.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되어 혼합공탁을 한 후에 양도인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다른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양수인과 선행가압류채권자 사이에서만 채권액에 안분하여 배당함이 타당하다.

#### □ 관련판례

① 채권가압류명령과 채권양도통지가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할 수도 있고, 또한 민집 291조, 248조 1항에 의하여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공탁을 할 수도 있으며,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할 수도 있다. 공탁자는 자기의 책임과 판단하에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가 그중 어느 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② 다른 한편, 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이에 저촉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로서는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치므로,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양도 등 처분을 함으로써 그 압류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처분 후에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는 유효한 처분이 되고, 이는 가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명령과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경우, 채권양수인은 그 후에 압류나 가압류를 한 다른 채권자에 대해서는 이미 채권 이 전부 양도되었음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후행 압류권자 등은 더 이상 그 채권에 관한 집행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대판 2013. 4. 26. 2009다89436).

#### □ 관련판례

[1]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이에 저촉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도 그 압류채권자와 처분 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의 상대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치므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처분한 경우에는 그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처분 후에 집행에 참가하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처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가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도달함으로써 채무자가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다른 채권자는 더 이상 그 가압류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가할 수는 없다.

[2]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3]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명령이 동시에 도달됨으로써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고, 그 후에 다른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채권양수인과 선행가압류채권자 사이에서만 채권액에 안분하여 배당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대판 2004. 9. 3. 2003다22561).

#### □ 관련선례

채무자 갑이 채권자 을에게 지급할 채무금 전액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양수인 병, 확정일자부 아닌 통지)가 있는 후, 위 채무금 전액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양수인 정, 확정일 자부 통지)와 을을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결정정보(채권자 병)이 갑에게 같은 날짜에 도달되어 그 도달의 선후를 알 수 없고, 이어서 을을 채무자로 하는 여러 건의 가압류 및 압류가 순차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갑은 민법 제487조 및 민집 제248조 제1항을 공탁근거 법령으로, '양도인 을 또는 양수인 정'을 피공탁자로 하여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공탁선례 2-311).

#### 나. 채권의 일부 양도 후에 가압류나 압류가 있는 경우

채권양도가 된 부분에 대하여는 채권양수인만이 배타적인 채권자가 되므로, 양수인에게 변제하면 되고, 양도가 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가압류나 압류가 있으므로 집행공탁을 하면 된다. 그러나 만약 양도의 효력에 문제가 있거나 채권양도와 가압류 또는 압류의 우열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양도가 된 부분에 대하여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집행공탁과의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 다. 채권전부 가압류, 채권일부 양도, 채권 압류(압류경합 불문)가 있는 경우

① 이 경우 양도되지 않는 채권에 대하여는 가압류와 양도 이후의 압류가 경합되고 있으므로 제3채무자는 민집 248조 1항을 근거로 집행공탁을 한 후 집행법원에 사유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집행법원은 곧바로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양도된 부분에 대하여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가압류가 취하 또는 취소되거나 본안소송의 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면 양수인이 출급청구할 수 있고,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되면 공탁관의 사유신고로 집행법원 이 배당절차를 진행한다. 이때 양도에 후순위인 압류채권자는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

#### □ 관련선례

채무자가 채권자 갑에게 채권을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그 채권의 일부가 을에 의하여 가압류된 상태에서 그 채권 전부가 병에게 양도(확정일자부 통지)되었고, 이어서 '정, 무' 등 다른 다수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경우에 있어서 갑의 병에 대한 채권 전액 양도는 채권양도에 앞서

율이 가압류한 일부분에 대하여는 을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채권양도 이후에 이루어진 '정, 무' 등의 가압류에는 우선하므로 채무자로서는 일단 을이 가압류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양수인 병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이다(공탁선례2-322).

#### 라. 채권일부 가압류, 채권전부 양도, 채권압류(압류경합 불문)가 있는 경우

이 경우 가압류된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가압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양도의 효력에 다툼이 없는 경우라면 양수인에게 지급하든가, 수령거절 등을 원인으로 변제공탁을 하면 된다. 다만, 양도의 효력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 마.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해 압류가 경합된 경우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공탁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 등이 경합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결합된 혼합공탁을 하여야 하고, 공탁서에 피공탁자를 채무자(근저당권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공탁근거법령으로는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변제공탁과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경합으로 인한 제3채무자를 대위한 집행공탁이 결합된 혼합공탁으로 민법 364조, 487조 및 민집 248조 1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 관련판례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은 저당권자의 배당금청구권에 미치므로 가압류가 존속하는 한 당해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저당권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을 하여야 하는데, 피고들이 근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기 이전에 그 피담보 채권에 관하여 원고 등의 가압류채권자들에 의하여 수 개의 가압류집행이 이루어졌다면, 원고 등의 가압류가 저당권부 채권의 양수인에 우선하게 되므로, 공탁관이 부동산경매절차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게 배당되었다가 공탁된 각 금원에 관하여 가압류의 경합 등을 이유로 혼합공탁으로 공탁원인을 정정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 등은 그 공탁금에 대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가압류채권자로서 그 배당기일에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한 이상,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대판 2013.8.23. 2012다65270).

#### 바. 혼합공탁 후 양수인이 제3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채권만족을 얻은 경우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후 채권가압류결정 정보를 송달 받았고, 그 후 채권양도의 효력에 다툼이 있어 제3채무자는 민법 487조 후단 및 민집 291조, 248조 1항에 의하여 혼합공탁을 한 후, 양수인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양수금청구소송에서 얻은 집행권 원으로 제3채무자의 다른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채권만족을 얻은 경우 제3채무자는 공탁원인 소멸을 원인으로 하는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면 된다. 이러한 경우 공탁원인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양도인의 채권포기서 내지 제3채무자의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와 가압류채권자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및 제3채무자가 양수인에게 양수금 전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된다. 또한 양도인과 가압류권자의 위 서면에 같음하여 양도인과 가압류권자를 각 피고로 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대상채권이 부존재 한다는 확인판결을 받아 그 판결서 정보를 첨부할 수도 있다(공탁선례 2-318).

#### 사.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과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14조, 건설산업기본법(=건설법) 35조에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사업자(건설법상 하수급인)가 하도급계약의 직접 상대방인 원사업자(건설법상 수급인)가 아닌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하 하도급법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하도급법 14조 1항 1호 및 2항의 규정은 원사업자의 지급정지나 파산 등으로 인해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연쇄부도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두게 된 것으로,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 중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일반채권자들보다 수급사업자를 우대한다는 의미를 가진다(대판 2007. 6. 28. 2007다17758).

하도급법 14조 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청구권이 발생하게 된다(대판 2008. 2. 29. 2007다54108 참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면 그 금액만큼 발주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은 수급사업자에게 이전 하게 되고,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하도급법 14조 2항 참조)

이와 같이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채무가 소멸하면 원사업자의 채권자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없게 된다. 그와 반대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되었다면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하고(대판 2003. 9. 5. 2001다64769 등 참조),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대판 2014. 11. 13. 2009다67351 참조).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과 원사업자의 채권자가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한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로서, ① 제3채무자인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 발생여부나 범위,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과 (가)압류 사이에 그 우열을 알 수 없는 경우, ②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과 (가)압류가 동시에 도달한 경우에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결합된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공탁근거법령은 민법 487조 후단, 민집 248조 제1항(또는 민집 291조, 248조 1항), 하도급법 시행령 9조 2항으로 기재한다.

#### □ 관련판례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사업자의 지급정지나 파산 등으로 인해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연쇄부도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두게 된 것으로, 수급사업자의 자재와 비용으로 완성된 완성품에 대한 궁극적인 이익을 발주자가 보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은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과 밀접한 상호관련성이 있는 반면 원사업자의 일반채권자들이 원사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러한 관련성이 없다는 것에 근거하여,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 중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일반채권자들보다 수급사업자를 우대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인바, 영세한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원사업자가 파산한 경우에 인정되는

이러한 직접청구제도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라 하여 배제될 이유는 없는 것이므로(특히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회사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파산의 경우보다 불리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원 사업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정리채권에 관하여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하게 할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고 정한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법 제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가 구 회사정리법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7조 제1항이 금지하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7. 6. 28. 2007다17758).

\*\*\* 327- 329 페이지 까지 내용 모두 아래 내용으로 교체

## 9.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권 안내문 발송

### 가. 목적

공탁금 출급청구 안내문 발송제도는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출급되지 아니한 변제공탁, 집행공탁, 재판상 담보공탁, 그 밖의 공탁사건의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 행사를 촉구하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소멸시효 완성 전 국고귀속되는 공탁금을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관해 2019. 6. 4. 법 9조 4항 및 규칙 60조의2(소멸시효 완성 전 안내) 및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1203호)이 제정되어 공탁소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안내문 발송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공탁소에서 발송하던 안내문 발송 업무를 2020년부터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 나. 담당 및 안내방법

안내에 관한 업무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에서 처리하며 사법등기심의관이 담당한다.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에 대한 안내는 1. 우편발송, 2. 앱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전자적 안내"라 한다)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는 공공기관·전기통신사업자 등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아래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1. 공탁금 출급·회수권자의 성명(상호, 명칭)
2. 공탁금 출급·회수권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3. 공탁금 출급·회수권자의 주소(본점, 주사무소)
4. 공탁금 출급·회수권자의 전화번호

또한 이러한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고유식별번호,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고,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안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규칙 60조의2)

### 다. 우편안내

#### (1) 우편안내 대상 사건 및 대상자

직전 연도 말 기준 만 2년, 4년, 6년 및 8년 전인 해에 수리된 공탁사건 중 잔액이 10만원 이상인 ① 변제공탁사건의 피공탁자 ② 집행공탁사건의 피공탁자 ③ 재판상 보증공탁사건의 공탁자 ④ 개인회생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한 공탁사건의 피공탁자를 안내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사건 또는 대상자의 주소가 불명인 사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안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우편안내 절차공탁금 출급·회수청구에 관한 안내문(이하 "안내문"이라 한다) 발송 대상자에 대하여 주소변경 여부 등을 전산시스템 등으로 조회하고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로 발송한다. 안내문 양식은 별지 1~5에 마련되어 있다.

#### (3) 안내문 발송사건의 처리방법

- (가) 안내문을 발송한 경우 그 송달정보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나)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사건의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게 안내문이 송달된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되고 송달된 날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다만, 공탁일부터 15년이 경과하면 편의적 국고귀속 처리한다. 이와 달리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하여 안내문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국고귀속 처리한다.
- (다)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은 사건은 안내문의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공탁일부터 15년이 경과하면 편의적 국고귀속 처리한다.

## 라. 전자적 안내

### (1) 전자적 안내 대상 사건 및 대상자

직전 연도 말 기준 만 2년 전부터 만 8년 전까지 수리된 공탁사건 중 잔액이 10만 원 이상인  
 ① 변제공탁사건의 피공탁자 ② 집행공탁사건의 피공탁자 ③ 재판상 보증공탁사건의 공탁자  
 ④ 개인회생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한 공탁사건의 피공탁자를 안내 대상으로 한다. 공탁일로부터 만 14년이 경과한 사건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도 전자적 안내를 실시할 수 있다.

### (2) 전자적 안내 절차

- (가) 전자적 안내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여 안내 대상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조회한다.
- (나) 전자적 안내 대상사건 중 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이고, 안내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사건은 행정자치부 등 주민등록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안내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여 위 (가) 절차를 진행한다.
- (다) 위 (가), (나)에 따라 안내 대상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회신받은 경우 ①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 성명 ② 관할 공탁소·공탁종류·공탁사건번호 ③ 공탁금액(잔액) ④ 공탁유형별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절차 ⑤ 그 밖에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전자적 안내를 한다.

### □ 관련선례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자가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공탁사건에 대하여 전자적으로 안내한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안내’ 수신내역을 소명한 경우, 공탁관이 공탁금 출급·회수청구를 인가할 수 있는지 여부(공탁선례202406-1)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자가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공탁사건에 대하여 전자적으로 안내한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안내’ 수신내역을 출력하여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소명한 경우 공탁관은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출급·회수청구를 인가할 수 있다.

### 마. 추가적 안내 대상

공탁종류, 잔액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안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공탁관이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 관할 공탁사건에 대하여 안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편안내 및 전자적 안내 대상 사건 및 대상자 이외의 사건 및 대상자에 대하여도 우편안내 또는 전자적 안내를 할 수 있다.

**바. 보고**

매년 1월 31일까지 ① 직전 연도의 안내문 발송 건수 및 도달 건수, ② 직전 연도의 안내문 발송 후 공탁금을 출급·회수한 사건 수 및 그 지급액, ③ 그 밖에 안내문 발송결과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사. 유의사항**

안내문은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를 대신하여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시의 첨부서류가 될 수 없다.

\*\*\* 346 페이지 아래 붉은색 부분 ... 파란색처럼 수정

...

~~④ 그리고 전부명령의 효력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전부채권자의 공탁금 지급청구도 불수리하여야 할 것이다(공탁선례 제2-89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의 압류금지채권인 급여채권의 2분의 1 상당액을 변제공탁한 경우 위 변제공탁금 출급청구권은 급여채권의 성질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④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의 압류금지채권인 급여채권의 2분의 1 상당액을 변제공탁한 경우 위 변제공탁금 출급청구권은 급여채권의 성질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이 경우 피공탁자인 근로자는 전부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피공탁자에게 출급청구권이있음을 증명하는 확인판결(또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을 얻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